

# 교직과정 이수 규정

□ 제정 : 1998. 5. 21

□ 개정 : 2017. 5. 0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교원자격 검정령에 의하여 수원대학교에 설치된 교직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교직과정 이수자)** 교직과정의 설치가 승인된 각 학(부)과 학생으로서 졸업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중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설치학부(과))**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(부)과는 “별표1” 과 같다.

**제4조(이수신청)**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3학년 1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학부(과)장을 경유 교무입학처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5조(이수기간)** 교직과정은 제2학년 1학기부터 최종 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6조(이수학점 및 과목)** ① 교직과정에서 이수할 학점은 21학점이며, 그 과목별 학점 배점은 “별표2” 와 같다.

②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 “별표3” 의 표시과목별 기본 이수 영역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학기당 수강학점수)** 교직과정은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인 21학점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이수인정)** 교직과정 이수자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기 80점(B0)이상이어야 그 이수를 인정한다. 다만,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표시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이어야 한다.

**제9조(교육실습)**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학년도에 지정된 협력학교에서 소정기간 교육실습을 하여야 하며 교육실습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.

**제10조(교직과정 운영)** 교직과정 운영 및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실습생이 부담하는 실습비로 충당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.